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필요한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의 분류체계 개발·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하(안 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 대신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같은 임차 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금액이 재산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유권 취득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라는 요건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99에서 1만분의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7호”를 “법 제63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환자 분류체계”를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공개 및 환자 분류체계의”를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의”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80”을 “75”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 소유권”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으로,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3개월(해당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합산액”을 각각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4조제1항 중 “699”를 “70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3원”을 “208.4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억6,199만원 초과	18,768.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 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업무) ① <u>법 제63조제1항 제7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3. <u>법 제63조제1항제2호</u>에 따른 영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u>제6호</u>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u>환자 분류체계</u>의 개발·관리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u>제6호</u>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p>② 제1항제1호·<u>제3호</u>·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u>공개</u> 및 <u>환자 분류체계</u>의 개발·관리의 절차·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p>	<p>제28조(업무) ① <u>법 제63조제1항 제8호</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u>법 제47조의4</u>----- ----- ----- 4. ----- <u>제7호</u>----- ----- ----- <u>환자 분류체계</u> 및 <u>영양급여</u>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 5. ----- <u>제7호</u>----- ----- ----- <p>② ----- <u>제2호</u>----- ----- ----- <u>공개</u>, <u>환자 분류체계</u> 및 <u>영양급여</u>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의 -----</p>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
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
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생 략)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
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75

나.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

1. -----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의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

-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
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
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
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 이
하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
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
을 받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
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
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
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
(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
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
유권-----

----- 3
개월(해당 세대가 임차하
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
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
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2. -----

가. -----

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② (생략)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

----- 이내일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
-----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 -----

-----.
2. -----
----- 합산액

의 3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

④·⑤ (생략)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한다.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

----- 709-----.

② -----

--- 208.4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